

#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7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6.  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·관리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·정비하고,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위탁·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, 여가선용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대상 폐기물(안 제4조)
  -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상 가연성폐기물이 부족할 경우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반입 가능
- 나. 클린에너지파크의 시설별 분리 위탁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다. 주민편익시설 사용 감면대상 및 감면율(안 제13조 신설)
- 라. 주민편익시설 사용의 우선순위(안 제14조 신설)
- 마. 소각열의 이용(안 제15조 신설)

## 3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## 4. 기타 참고자료 : 별첨

- 붙임 :
- 가.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  - 나. 신구조문대비표
  - 다. 기타참고자료(관계 법령 및 공문)

##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·관리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단서(후단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상 가연성 폐기물 부족 등으로 운영의 효율이 저하될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에 단서(후단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각시설, 재활용선별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각각 분리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제3항 중 "관계공무원으로"를 "공인회계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"로 한다.

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.

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주민편익시설의 사용)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·징수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의 감면은 각 시설별로 1일 1회에 한한다.

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주민편익시설 사용 우선순위) 운영자는 동일기간에 주민편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.

1. 국가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
3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
제15조(소각열의 이용) ①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·증기와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. 다만,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각시설을 유치한 마을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, 공급조건, 판매대금,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<p><u>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의 감면은 각 시설별로 1일 1회에 한한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주민편의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4조(주민편의시설 사용 우선순위) 운영자는 동일기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국가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</u></li> <li><u>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</u></li> <li><u>3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</u></li> </ol>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5조(소각열의 이용) ①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·증기와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. 다만,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각시설을 유치한 마을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, 공급조건, 판매대금,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.</u></p>
<p><u>제13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 시장은 클린에너지파크 설치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,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.</u></p>	<p><u>제16조 (현행 제13조)</u></p>
<p><u>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</u></p>	<p><u>제17조 (현행 제14조)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례」, 「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, 「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등을 준용한다.</p> 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8조 (현행 제15조)</p>

**[별표 1]****주민편익시설 감면대상자 사용료 감면율(제13조 관련)**

	구 분	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율
1	주변영향지역거주자	80%
2	이류면 및 용관1,2,3,4통	50%
3	장애인	50%
4	경로우대(만64세이상)	50%
5	국가유공자	50%
6	기초생활수급자/소년,소녀가장	50%
7	선수단 및 현역선수	50%
8	대학생할인제도	20%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

제30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# 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시행령

제35조(권한·업무의 위임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(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
2.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

승인 및 공고(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·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

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 출자한 법인
2.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
3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(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